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78 발의연월일: 2024. 12. 6.

발 의 자: 장철민·한창민·민병덕

복기왕 • 위성락 • 이용우

황명선 • 한병도 • 채현일

황정아 • 박희승 • 이재관

김교흥 · 김한규 · 강선우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,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회의 기능이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,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

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국회 기능의 유지)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3조의2(국회 기능의 유지) 대
	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
	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
	<u>수 없다.</u>